의안번호	2203120
의 뢰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4. 10. 18.
추계번호	24A310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73억 4,900만원(연평균 314억 7,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된 비용 중 국가 부담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63억 5,900만원(연평균 312억 7,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억 9,000만원(연평균 1억 9,800만원)으로 추계

○ 소요 비용 중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1) 의안번호 제31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23.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312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23.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1항) (A)	7	7	7	7	7	35	7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2항) (B)	198	198	198	198	198	990	19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C)	35,508	33,361	31,215	29,068	26,922	156,074	31,21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안 제14조) (D)	50	50	50	50	50	250	50
합 계(A+B+C+D)	35,763	33,616	31,470	29,323	27,177	157,349	31,470
- 국가 부담 비용(A+C+D)	35,565	33,418	31,272	29,125	26,979	156,359	31,272
-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B)	198	198	198	198	198	990	19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제1항)	의무규정
		석유화학단지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유화학단지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안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안 제7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안 제8조(지원금의 사용)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제5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제6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며, 특별회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석유화학단지의 규모·생산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조) 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제8조)	의무규정
4	안 제14조 (지원사업의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
2	안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이 소요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계획 수립 시 수반되는 비용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지역 계획의 경우 지역별 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에 따라 소요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과 동일한 구조로 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3]에 따른 계획 수립 사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 계획은 매년 수립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은 수행된 바 없음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별 장기계획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개 시·군·구에서 총 3건[4] 수립된 바 있음. 그 밖에 연구용역비 집행 규모를 참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외 다른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사례를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편차를 보임[5]
3	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안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안 제7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안 제8조(지원금의 사용)	○	-
4	안 제14조 (지원사업의 평가)	○	-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안 제14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3조제1항[6]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므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안 제7조[7]에 따라 전액 국가재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의 경우 안 제3조제2항[8]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기계획 수립 현황(2019~2023년)

사업계획	기관명	계획 수립 시기
서산문학관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계획	충청남도 서산시	2021.2.
치유농업 시설단지 조성 사업계획	경상북도 울진군	2021.2.
새울 3,4호기 이주대책단지 내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례

과제명	기관명	연구기간	계약금액(천원)
경기도 내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현황 조사 및 주민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경기도	2019.11.~2020.12.	180,000
국가기간산업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평택시	2020.7.~2021.5.	20,24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23.4.~2024.6.	131,780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6) 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안 제7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8) 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② 석유화학단지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유화학단지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에서 설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4조제1항[9]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평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3조)** 심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1항)** 심의위원회의 경우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 13명 중 7명, 회의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0]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구성 및 회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빈도를 참고하여 가정[11]

---

9) 안 제14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1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소속 및 성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설치목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능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지원금 결정 및 지자체별 배분, 지원사업 결산 및 평가 등 심의
위원	· 위원장: 에너지정책실장 · 총 13명(당연 6, 위촉 7)
회의 개최실적(2022.7.~2023.6.)	· 본회의: 서면 4회 · 분과회의: 해당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3.8.

○ **(제2항)** 지역위원회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 15명 중 9명,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는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각각 연 4회 및 25만원으로 가정

- 안 제3조제2항은 지역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경우에만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역위원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2024년 3월 기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모든 기초자치단체(22개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한 법령의 규정례[12]를 고려하여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자료] 석유화학단지 현황(2024.3. 기준)

-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사례[13]를 참고하여 총 정수 15명 중 9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기능[14] 및 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 횟수에 대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연 4회로 가정

---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4명 이내. 다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수당 단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와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심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제8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이 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실시되는 다른 사업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추계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전제에 따라 다른 사업의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사업이 신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15]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 제5조[16]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만큼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제10항[17]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

15)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규모만큼을 추가재정소요로 보고 추계함

16) 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⑩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금액"만큼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은 3%보다 적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지원 비율의 상한인 3%만큼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위 규정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외에도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함께 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의 경우 징수액이 크지 않아 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총 가산금 수납액은 최근 5년간 (2019~2023년) 연평균 5,700만원 수준[18]

❑ **(안 제14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 제14조제2항[19]에 따라 해당 평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평가 위탁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탁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 및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18) 아래 가산금 수납 실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외에도 「광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수납되는 가산금 일체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가산금이 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금액의 3%보다도 적을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2019~2023)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9	133	59	33	20	5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 안 제14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안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계를 위하여 202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1항)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0만원(연평균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7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700만원

[표 2]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1항)	7	7	7	7	7	35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2항)

❑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 및 위원회 수(시·군·구 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1,000만원(연평균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9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시·군·구 수(22개) = 연 1억 9,800만원

[표 3]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제2항)	198	198	198	198	198	990	1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비용은 각 연도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전망치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추계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60억 7,400만원(연평균 312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각 연도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전망치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석유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각 징수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21]

[표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석유 수입 부과금[1]	석유 판매 부과금[1]	합 계
실적	2014	1,601,095	240,595	1,841,690
	2015	1,640,742	240,454	1,881,196
	2016	1,571,772	222,128	1,793,900
	2017	1,596,292	217,863	1,814,155
	2018	1,794,918	216,317	2,011,235
	2019	1,408,599	195,469	1,604,068
	2020	1,115,179	192,224	1,307,403
	2021	1,298,172	186,740	1,484,912
	2022	1,509,245	151,394	1,660,639
	2023	918,364	168,975	1,087,339
전망	2024	1,103,347	151,792	1,255,140
	2025	1,041,149	142,443	1,183,592
	2026	978,951	133,093	1,112,044
	2027	916,752	123,743	1,040,496
	2028	854,554	114,393	968,948
	2029	792,356	105,044	897,400

주: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 수입 부과금: 원유·석유제품, LNG(일반용·발전용)
- 판매 부과금: 고급휘발유, LPG(부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시행된 조치 중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추세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톤당 24,242원→16,730원)의 경우 해당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음

[표 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5,508	33,361	31,215	29,068	26,922	156,074	31,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안 제14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탁하는 데 소요된 평균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억 5,000만원(연평균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위탁에 소요된 연평균 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기간 동안 위탁 비용에 일정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준용한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위탁 소요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수탁기관	소요예산		
		평가위원회 심의료(A)	수혜자만족도 조사용역(B)	합계(A+B)
2019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 사업단 및 한국경제경영연구원	3,750	43,000	46,750
2020	〃	2,500	44,000	46,500
2021	〃	2,500	59,000	61,500
2022	〃	3,280	42,000	45,280
2023	〃	3,750	46,000	49,750
연평균(2019~2023년)		3,156	46,800	49,9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안 제14조)	50	50	50	50	50	250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추계된 비용 중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소요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 안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안 제14조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비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2024년 3월 기준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모든 시·군·구에 1개의 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 지역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개수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징수 실적의 추세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규모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석유화학단지 현황(2024.3. 기준)

(단위: 개, %)

구분	시도	시군	단지명	입주업체 수		
				입주업체(A)	석유화학(B)	B/A
국가 (5개)	충북	보은군	보은	1	1	100.0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73	45	61.6
	충남	서산시	대죽자원비축	1	1	100.0
	전남	여수시	삼일자원비축	2	2	100.0
	경남	거제시	지세포자원비축	1	1	100.0
일반 (35개)	세종	세종	전의2	32	20	62.5
	경기	안성시	덕산	11	8	14.3
	경기	안성시	방초	9	6	66.7
	경기	안성시	안성제3	50	28	56.0
	경기	안성시	원곡	7	4	57.1
	경기	안성시	월정	5	2	40.0
	경기	파주시	축현	93	33	35.5
	경기	화성시	팔탄(한미약품)	1	1	100.0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	52	45	86.5
	경기	안성시	지문	1	1	100.0
	경기	평택시	고렴	9	3	33.3
	경기	안성시	개정지방	12	6	50.0
	경기	화성시	영진바이오	1	1	100.0
	경기	화성시	동진	1	1	100.0
	강원	춘천시	남면	1	1	100.0
	강원	춘천시	남춘천	21	9	42.9
	충북	충주시	중원	24	14	58.3
	충북	진천군	이월	5	5	100.0
	충북	괴산군	괴산첨단	13	5	38.5
	충북	충주시	대신	1	0	0.0
	충북	진천군	죽현	2	1	50.0
	충북	진천군	초평은암	12	5	41.7
	충북	보은군	보은	53	25	47.2
	충남	공주시	탄천	34	25	73.5
	충남	서산시	대산	4	4	100.0
	충남	서산시	대산컴플렉스	3	3	100.0
	충남	서산시	현대대죽	3	2	66.7
	충남	당진시	합덕인더스파크	5	2	40.0
	충남	예산군	예당	41	22	53.7
	충남	서산시	대산3	12	2	16.7
	충남	금산군	금산	1	1	100.0
	전남	나주시	문평	7	0	0.0
	경북	영주시	SK머티리얼즈	3	3	100.0
	경남	창녕군	넥센	1	1	100.0
	경남	진주시	지수	4	4	100.0
합계				603	335	55.6

주: 업종별 생산액 자료(석유화학)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출 어려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